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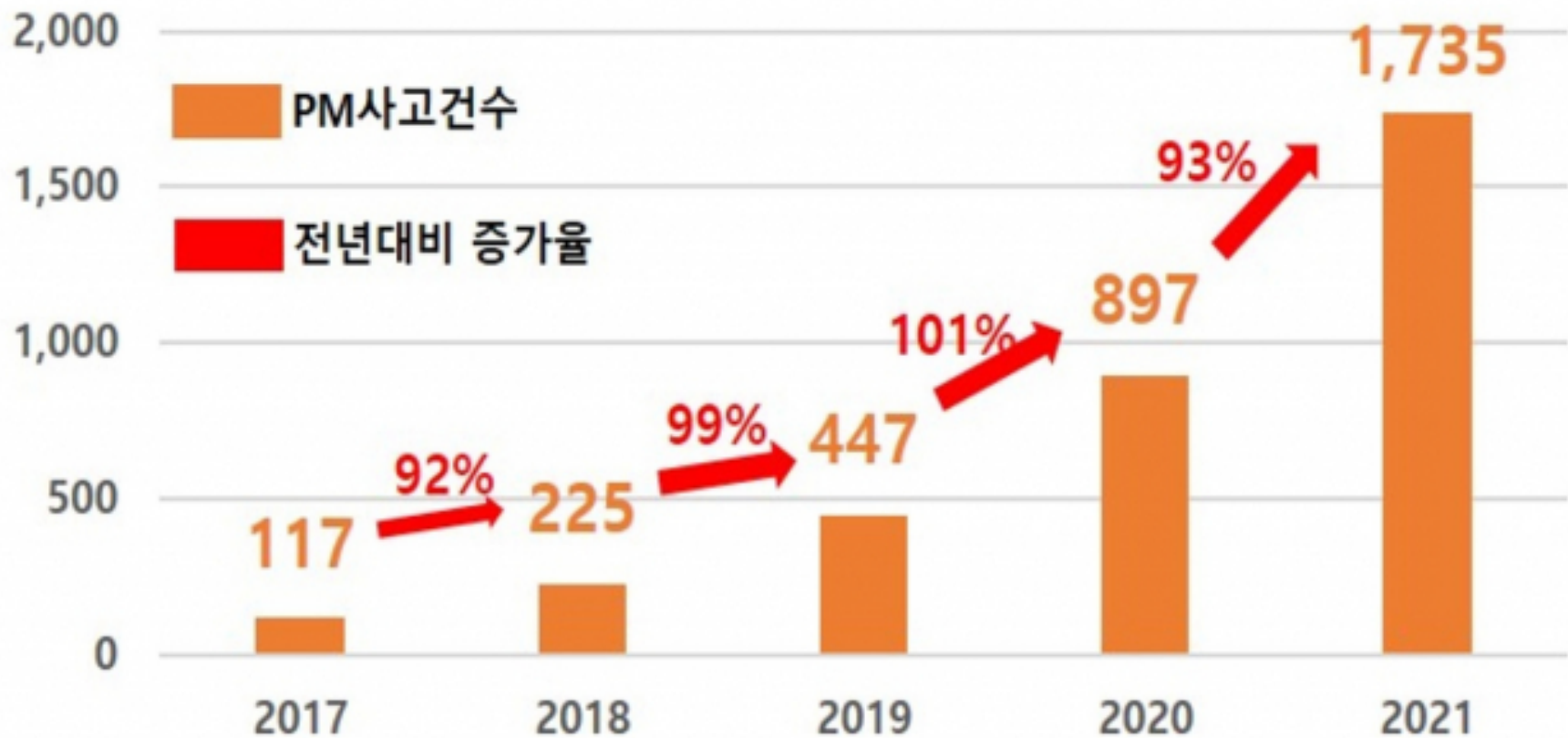


# 개인형 이동장치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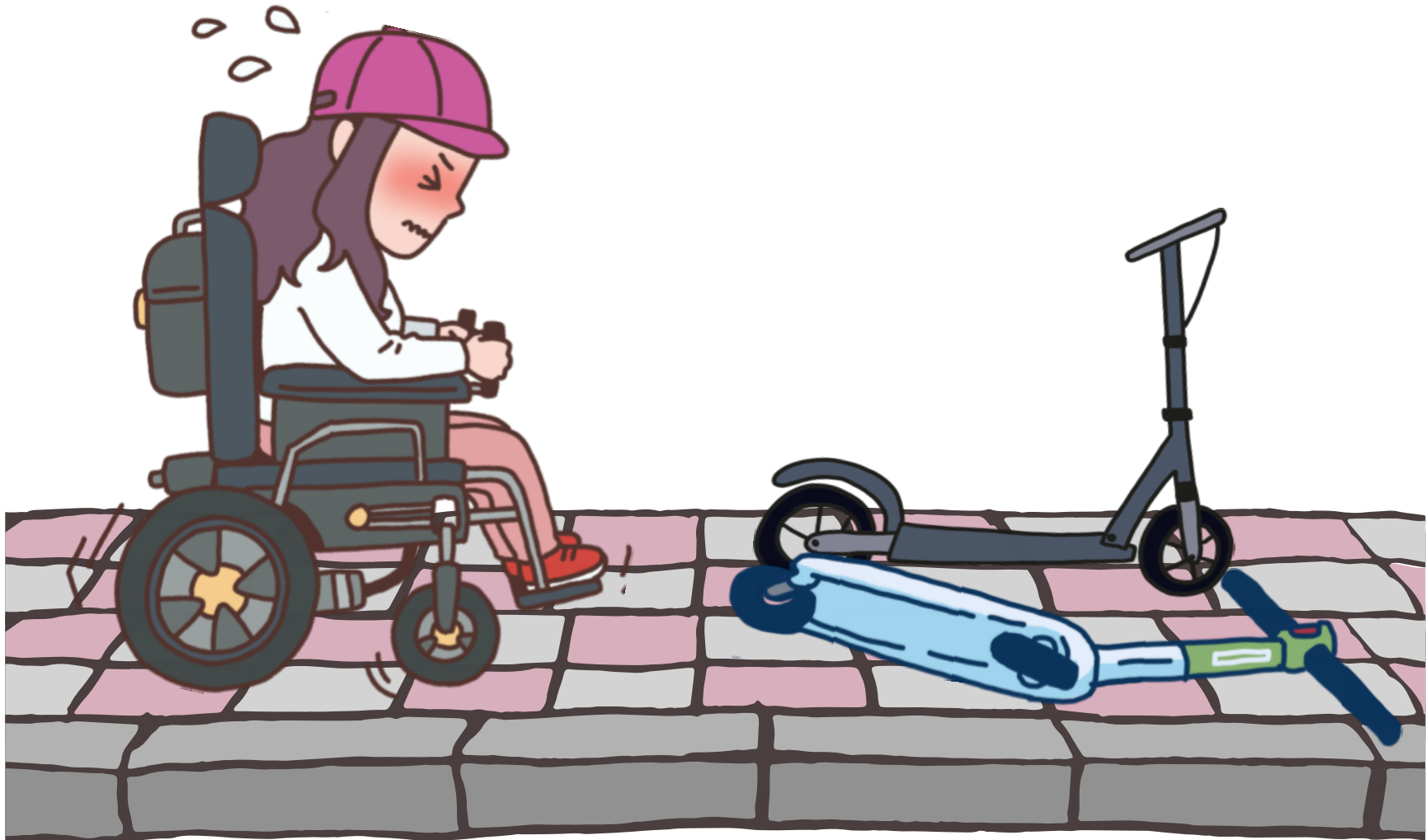
- 불법주차 문제 -

##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
[그림1]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(PM) 교통사고 현황 (단위: 명)



<출처: 도로교통공단>



특히 학교를 비롯한 많은 거리나 횡단보도 등에 주차된  
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일반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으며,



이에 걸려 넘어지거나, 사고로 이어져  
다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
## 시각장애인 '생명선' 위협하는 전동킥보드

김인규기자 kimingyu1220@kwnews.co.kr

기자의다른기사보기



입력: 2023-06-05 00:00:00



마부작침 사회

## [마부작침] 주차 공유킥보드에 골절...

유덕기 기자 작성 2021.12.03 10:57 수정 2021.12.03 13:22 조회 3,451



길가 널브러진 민폐 킥보드 시민들 못 피하고 다치기도

이나라 기자 | 승인 2023.03.30 19:35 | 수정 2023.03.31 09:35 | 2023.03.31 7면 | 댓글 0

'점자 블록 차지한 킥보드',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유발



기사입력 : 2023.04.25 15:39



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일부 지자체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

서울	대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차금지된 장소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</li><li>- 공유킥보드 무단주차 4회 적발시 이용자 계정 취소 등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1시간 이상 무단방치 시 견인조치.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(견인비, 보관비 등)은 이용자 부담</li></ul>



대전시는 전동킥보드 등을 지정된 주차공간 이외의 곳에 **1시간 이상 무단방치 시, 견인조치** 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

지자체의 노력 외에도, 모두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  
이용자들이 스스로 '주차매너'를 숙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
## 매너 수칙 핵심정리★



**보행자 통행  
방해 금지**  
보도중앙, 횡단보도,  
산책로, 건물,  
상가, 빌딩 등



**탑승자 승하차  
방해 금지**  
버스 정류장,  
택시 승강장,  
지하철역 출입구 등



**교통약자 통행  
방해 금지**  
점자블록, 장애인,  
교통약자들을 위한  
엘리베이터 입구 등



**사고 위험 장소  
주차 금지**  
공사장 주변, 터널 안,  
다리 위, 계단 등



**소방 시설 접근  
방해 금지**  
소방 시설 5m 이내,  
소방차 전용 구역



**차량 진출입  
방해 금지**  
건물, 상가,  
빌딩 출입구 등



#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은 **추차**까지입니다.

##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소

